패소원인분석표

패소원인 구분	사건의 성질상 패소 또는 행정처분 잘못		
	증거멸실		
	법원과의 법령해석, 증거판단,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한 견해차이		○
	소송 수행 잘못	사실적 · 법률적 검토부족	
		주장잘못	
		증거제출 부적절 또는 미흡	
		상대방 주장 · 입증에 대한 대처 미흡	
	기 타		
구체적인 패소원인	○ 서대문구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, 원고측 소의 이익에 대한 변론에 대해 법원의 판단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결. ○ 서대문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대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재처분을 하였음에도, 법원은 원고가 계약체결하지 않은데에는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음. ○ 입찰보증금 귀속처분의 취소에 대한 부분은 원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각하시킴.		
소송수행 잘못에 대한조치	**없음**		
참고사항			

2015. 05. 15.

작성자 직급 지방행정주사보 성명 권 소 영 (인)

확인자 재무과장 성명 정 상 희 (인)